

상호 협력 업무협약(MOU) 체결 진행 계획 안

개요

- 일 시: 2018년 3월 28일(수) 11:30-13:00(오찬 포함)
- 장 소: 웨스틴 조선호텔 코스모스룸
- 참석자:
 - 서울연구원: 서왕진 원장, 남원석 연구기획실장, 신상영 안전환경연구실장, 조항문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, 박광주 소통협력팀장, 이효순, 이소은, 손우진
 - 녹색기술센터: 오인환 소장, 해당부서장 등 5-6인
- 협약체결: 양 기관 대표 - 서왕진 원장, 오인환 소장

업무협약 주요 내용

-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분야의 정책 연구 협력
-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분야의 공동연구 포럼, 세미나 개최 및 글로벌 협력
- 국내외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교류
- 양 기관 간행물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활동 홍보 등

진행 계획

시간	주요내용	비고
11:30	양 기관장 인사말씀	진행: 녹색기술센터
11:45	양 기관간 향후 협력 방안 등 협의	양 기관장 참석 간부진
11:55	협약서 서명 증정품 전달 사진 촬영(양 기관장, 참석자 전원)	양 기관장
12:00	오찬	

□ **소요예산: 총 85만원**

○ 세부 내역

구 분	세부 내역	소요예산	지급방법
운영 경비	- 점심 식대(3만원 × 20명)	60만원	법인카드
	- 행사장 현수막 및 배너 제작 등	25만원	지급기안

※ 장소 대관료, 다과 등 나머지 운영경비는 녹색기술센터에서 부담하기로 함.

○ 예산과목

- 대외협력, 소통협력, 국내·외 소통협력네트워크강화(행사홍보비)

서울연구원(SI) - 녹색기술센터(GTC) 상호 협력 업무협약서

서울연구원과 녹색기술센터(이하 '양 기관')는 시민의 삶의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, 환경 및 안전과 방재 등의 분야에서 정책연구 및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(이하 '이 협약')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정책 연구 및 협력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 내용 및 범위) 양 기관은 아래 각 항에 대해 법령과 양 기관의 내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력하며,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.

1.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분야의 정책 연구 협력
2.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분야의 공동연구 포럼, 세미나 개최 및 글로벌 협력
3. 국내외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교류
4. 양 기관 간행물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활동 홍보
5. 기타 협약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

제3조(협약 이행) 양 기관은 이 협약 사항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 각 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.

1. 이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2. 이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써 세부사항 및 시행세칙이 필요하거나,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3. 양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 기관 중 일방의 제안에 의하여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호 업무협의를 책임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경비 사용)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

제5조(비밀 및 보안 유지)

- 1안)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, 연구 활동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 이는 이 협약의 효력이 종료한 이후에도 동일하다.
- 2안) 양 기관은 상호 서면동의 없이는 이 협약과 관련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시행 약정)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합의한 업무 협력 내용의 상세한 범위, 방법, 절차 및 권리의무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시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7조(효력 발생 및 협약 기간)

- 1. 이 협약은 양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- 2.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약정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8조(협약서 교환)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,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3월 28일



서울연구원
원장 서왕진



녹색기술센터
소장 오인환